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서

소 속 : 벽산파워(주)

직 책 : 책임감리원

성 명 : 이길노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의거 "진접선(4호선 연장)차량기지 신호보안설비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지정)합니다.

※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2024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 1)ONE-PMIS 업무지시전 등을 활용한 전자문서형태로 건설사업관리단에게 발송하고,
2)ONE-PMIS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문서 등록 할 것